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42호 2017. 10. 27(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2017-1411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남원시 공고 제2017-1425호 도로지정공고(월락동 192) -----	22
○남원시 공고 제2017-1428호 공인등록공고(환경사업소) -----	23
○남원시 공고 제2017-1433호 덕읍산 철쭉공원(시설:유원지) 실시계획허가 인가전 열람공고 -----	24
○남원시 공고 제2017-1444호 도로지정공고(고죽동 658-15) -----	25
○남원시 공고 제2017-1451호 도로지정공고(인월면 인월리 26-1) -----	26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17-1411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간이화장실 정의 및 설치·관리조항 신설 (안 제2조제4호, 안 제15조의2, 안 제15조의3)
- 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조항 신설 (안 제9조제4호, 안제9조제5호)
- 다. 유료화장실 편의용품 비치·제공 조항 등 삭제(안 제17조제1호, 안 제17조제4호)
- 라.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0. ~ 2017. 11. 9.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 063-620-62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붙임 :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간이화장실 정의 및 설치·관리조항 신설 (안 제2조제4호, 안 제15조의2, 안 제15조의3)
- 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조항 신설 (안 제9조제4호, 안제9조제5호)
- 다. 유료화장실 편의용품 비치·제공 조항 등 삭제(안 제17조제1호, 안 제17조제4호)
- 라.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0. . ~ 2017. 11. . (20일간)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를 “이런 공중이 이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런”으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을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기”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런”으로, “행사등”을 “행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을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로,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0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제3조제11호(중전의 제10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중전의 제12호를 제13호로,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을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연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소를 하여야 한다.”를 “청소를 실시할 것”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소독을 실시할 것”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연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를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할 것”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을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이를 잘**”을 “**잘**”로 한다.

제13조 중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을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설치·관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각각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를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독하여야 한다.**”를 “**소독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할 것

제4장에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관리)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

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 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제17조제2호(중전의 제3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u>영</u>”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 ----- <u>필요한</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 <u>뜻은</u> -----.</p>
<p>1. “<u>공중화장실</u>”이라 함은 <u>공중의 이용에</u>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p>	<p>1. -----<u>이란</u> <u>공중이 이용하도록</u> ----- ----- -----.</p>
<p>2. “<u>개방화장실</u>”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u>화장실중</u> <u>공중의 이용을 위하여</u>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p>	<p>2. -----<u>이란</u> ----- ----- <u>화장실 중</u> <u>공중이 이용하기</u> ----- ----- <u>제12조제1항에 따른</u> ----- -----.</p>
<p>3. “<u>이동화장실</u>”이라 함은 <u>공중 화장실을</u> 설치하기 어려운 지</p>	<p>3. -----<u>이란</u> ----- -----</p>

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등
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신 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
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
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
체중 영이 정하는 기관을 말
한다.

<신 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
용을 받는 공중화장실·개방화
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
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
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

----- 행사
등-----
-----.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
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
한다.

5. -----이란 -----

-----.

<삭 제>

6. “공공기관”이란 국가·지방
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
다.

제3조(적용의 범위) -----
----- 공중화장실·개방화
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
----- 각 호-----

장실로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제4항의 규정에

-----.

1. -----제2조제1호에 따른 -----
2. -----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
3. ----- 제2조제5호에 따른 -----
4. -----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
5. ----- 제2조제3호에 따른 -----
6. -----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 제2조제3호에 따른 -----
9. ----- 제2조제6호에 따른 ----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 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시설

13.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 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1. -----
----- 제2조제1호에 따른 -----

12. ----- 제2조제4호에 따른 -----

13.

14.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 화장실 등-----

-----.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민간위탁) ①공중화장실등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등 관리인(이하 “관
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계
획을 수립하여 연1회이상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
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
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매일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
-----.

제6조(민간위탁) ①시장은 공중화
장실 등-----
----- 인정하는 -----
-----.

②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
게는 예산의 범위-----

-----.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 등 -----

----- 연 1회 이상 -----
-----.

②제1항에 따라 -----

-----.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
리) 공중화장실 등-----

----- 각 호-----
-----.

- 1. -----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청소를 실시할 것

2. -----

소독을 실시할 것

3. -----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할 것

4.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

----- 따른 -----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

-----.

② 제1항에 따라 -----

-----.

제13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 -----
-----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

제4장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
----- 각 호-----.

- 1. -----

-- 설치할 것
- 2. -----
----- 설치할 것
- 3. -----
----- 설치할 것
- 4. -----

- 설치할 것

②-----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

- 1. -----
----- 지정
할 것
- 2. -----

- 할 것
- 3. -----

-----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
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
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
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
치·제공하여야 할 것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
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
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
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
로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
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관리) 간
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
용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설치·운영하려는 자
는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
----별지 제2호 서식-----

-----.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
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 부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생략)

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

-----.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
----- 각 호 -----
-----.

<삭 제>

1.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
----- 할 것

<삭 제>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해당-----
---- 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19조(시행규칙) -----
- 필요한-----
-----.

[별표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5조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 서양식 변기(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과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남원시 공고 제 2017 - 1425 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 ²)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m ²)	토지소유자
2017-2 0	남원시 월락동 191	김*임	2017-건축과- 신축신고-397	12.2	4	49	남원시 월락동 192	49	박*옥

남원시공고 제2017-1428호

공인 등록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남 원 시 장

□ 공인 신조 등록 [환경사업소]

- 1. 공인 등록사유 : 일상경비 집행을 위한 공인 등록
- 2. 공인 등록일 : 2017. 10. 26.
-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 원 시 환 경 사 업 소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cm × 1.8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목재		환경사업소

남원시 공고 제2017 - 1433호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 (시설:유원지)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7년 10월 27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어현동 37-99번지
 - 사업의 규모 : 조경 및 기타시설 3,780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산림과)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	어현	37	99	원	267,956	3,753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2	신촌	437	3	원	39,054	27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5.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17 - 1444 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7-2 3	남원시 고죽동 658-15	이*철	2017-건축과- 신축신고-423	55.25	4	221	남 원 시 고 죽 동 658-15	221	이*철

◎ 남원시 공고 제 2017 - 1451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 ²)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m ²)	토지소유자
2017-2 1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6-1	아*훈	2017-건축과- 신축신고-401	23	3.74	86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6-1	17	아*훈